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대상 조정 등〉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200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 제외	2
2.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령 기준 삭제	4
3. 보행환경개선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를 통보의무로 변경	7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연월일 : 2024. 6. 28.
3. 회부연월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 제외

개정안은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 대상에서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제외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u> 또는 <u>군수</u>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u>군의 군수</u> 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u>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시장</u>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 이하 “특별시장 등”이라 함)로 하여금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 도(道)의 관할 시장과 군수가 실태조사 실시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중복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 주체에서 도지사를 제외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상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강원도 및 전라북도의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¹⁾ 및 전북특별자치도²⁾의 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실태조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³⁾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같이 일반 도에서 특별자치도로 바뀐 경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과의 관계는 기존과 다르지 않으므로 해당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실태조사 의무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875호, 2022. 6. 10., 제정)

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214호, 2023. 1. 17., 제정)

3)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③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령 기준 삭제

개정안은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때 적용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생략) ②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u>조례</u> 로 정한다.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u> 로 정한다.

현행법은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⁴⁾하고 있음.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특히 현행법이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상위 법령에 따로 정할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또한, 현행 시행령은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으로 위원 정수 상한, 위원장 임명권자, 위원의 자격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정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⁶⁾하고 있어,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지역위원회 위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반적인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더라도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임.

3. 보행환경개선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를 통보의무로 변경

개정안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생략)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③ (생략)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통보</u> -----, ----- ----- -----.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⁷⁾하고 있음.

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⁸⁾이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행정기관의 보고의무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국회나 상급행정기관에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국회나 상급기관의 업무감독·통제 또는 평가의 수단이 되는 동시에 해당 기관의 입장에서는 정책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홍보 및 향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방향의 제시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함⁹⁾.

이와 같이 “보고”는 ‘지시 또는 감독하는 자에게 주어진 일의 내용이나 결과 따위를 말이나 글로 알림¹⁰⁾’을 의미하는 반면, “통보”는 ‘어떤 사실을 알리어 줌¹¹⁾’의 의미로 법률에서는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용어 변경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기존의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

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9)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720

10)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

11)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

적인 대등한 관계로 재설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49